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349 |
|----------|------|

2023년 1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봉양순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봉양순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사용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사용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재산법」”)에 맞추어 한강공원 내 이용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갱신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입법 취지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서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됨. 이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행정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¹⁾에 한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유인 한강공원 내 시설(휴양·여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허용한 시설²⁾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임.

2) 세부 내용 검토

- 현행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5년 이내에서 허가를 갱신³⁾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

2) 붙임 참고 : 사용허가 시설 현황 - 미래한강본부 제공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 반면, 한강공원 내 이용시설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선정된 경우이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총 5년의 허가 기간 내에서 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13조에서는 허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갱신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대부분의 허가는 2년 또는 3년으로 운영 중인 실정임.
- 한편,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허가 기간보다 영업을 일찍 종료했던 예도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운영자가 영업을 유지하고 싶어도 2년 또는 3년 만에 종료해야 하므로 시설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낮은 상태임.

이는 운영자의 시설 운영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약화하고, 매점 등 이용률이 낮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가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안 제13조와 같이 「공유재산법」을 준용하여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3)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더불어 갱신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하여 운영자가 갱신 신청⁴⁾을 할 때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는 물론 운영자의 운영 동기 및 능력 등이 충분한지 살펴본 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한강공원의 시설 현장 여건⁵⁾과 시민들의 이용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운영 기간을 적절히 결정해야 할 것임.

4)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제21조제5항).

5) 붙임 1 참고 :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수영장, 눈썰매장의 경우 60일 이내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선정은 일반 경쟁입찰에 <u>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p> <p><u><신 설></u></p> <p>③ ~ ⑤ (생 략)</p> | <p>제13조(위탁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의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